

## 한국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어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

- ①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고, 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를 안배하며,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.
- ②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편집위원의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.

제3조(구성 절차)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자격)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하며,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임무)

-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.
-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 및 게재 논문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.

제6조(소집)

- ① 정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30일 전에 소집한다.
-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부 칙

-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- ② 본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본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본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